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14. 11. .

발 의 자: 남연희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2005. 5. 12. 조례 제65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의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4. 11. 17. ~ 1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다”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중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을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으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를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를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이 조례에 따라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제1항에서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9조(표창의 시기)제1항 중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표

창은 정기적으로 하되”로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의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를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한다”로 한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에서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를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3조(표창자 명부)에서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를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제14조(시행세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u>행하는</u> 표창에 관한 사항을 <u>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u> ----- <u>하는</u> ----- <u>제정한 것이다.</u>
제2조(표창대상)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u>현저한 공적이 있는</u>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u>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u>	제2조(표창대상)	-----	<u>과</u> ----- ----- ----- ----- <u>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u>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u>의한</u>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u>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u>	제3조(표창의 종류)	-----	<u>다른</u>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u>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	<u>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u> ----- --.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u>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u>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	<u>상장, 감사장은 -- 제1호부터 제3호 서식</u> -----.
제9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u>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u>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u>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u>	제9조(표창의 시기)	① -----	<u>정기적으로 하되</u> ----- ----- ----- <u>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u> ② ----- <u>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한다.</u>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u>행할 수 없다.</u>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	----- <u>할 수 없다.</u>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u>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u>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3조(표창자 명부)	-----	----- <u>제6호 서식의</u> ----- <u>기록하여 관리한다.</u>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세칙)	-----	(삭제)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색인쇄
↓

금색인쇄
↓



제 호  금박지 인쇄

표 창 장

주소 :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은박지부과
적색리본



제 호  금박지 인쇄

표 창 장

소 속 :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은박지부과
적색리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금색인쇄
↓

금색인쇄
↓


제 호  금박지 인쇄


상 장

주소 :
성 명 :

(상 장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은박지부과
적색리본


제 호  금박지 인쇄

상 장

소 속 :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은박지부과
적색리본

<관 련 법 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

(제정) 2005.05.12 조례 제 656호
(일부개정) 2006.04.20 조례 제 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하거나 전통미풍양속 증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0 조례 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금색인쇄
↓



제 호

← 금박지 인쇄

표 창 장

주 소 :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 은박지 부착

← 적색리본

[별지 제2호 서식]

금색인쇄



제 호

← 금박지 인쇄

상 장

주 소 :

성 명 :

(상 장 문)

년 월 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 은박지 부착

← 적색리본



[별지 제3호 서식]

금색인쇄
↓



제 호

← 금박지 인쇄

감 사 장

주 소 :

성 명 :

(감 사 문)

년 월 일



←은박지부착

성 동 구 의 회 의 장

←적색리본

[별지 제4호 서식]

표 창 대 상 자 추 천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훈격				
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				

